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지역에 물류·제조·R&D 등 융·복합을 촉진하는 국제 물류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 국제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정한 지역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정의함(안 제1장).
-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국제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시·도지사가 이를 반영한 발전계획을 작성·제출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함(안 제2장).
-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및 기반시설 지원 외에도,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와 같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sandbox)’ 등의 특례를 인정함(안 제3장).

II. 검토의견

1. 주민의견 청취 관련 중복규정 정비 등(안 제8조)

안 제8조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8조제2항은 시·도지사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 등1)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작성절차에 관한 안 제10조²⁾제2항에서 시·도지사가 발전계획을 작성³⁾·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두 조문의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주민의 의견 청취는 시·도지사가 국제물류진흥지역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발전계획을 ‘제출’하는 단계가 아니라, 안 제10조제2항과 같이 발전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미리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한편, 안 제8조제3항 전단 괄호 부분은 국제물류시설에 무역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 제8조 및 안 제10조 등의 “국토교통부장관 및

1)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지역의 국제물류시설에 ‘무역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공동으로 소관하고,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함(안 제8조제1항).

2) **안 제10조(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수립)** ① 제8조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 필요에 따라 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3) 안 제10조는 시·도지사가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국제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수립되는 것이므로, 안 제10조제2항의 ‘수립’은 ‘작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만을 말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이 나열하고 있는 조문 외에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안 제26조 및 안 제30조의 경우에도 무역항이 없는 국제물류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만이 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들 조문도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안 제8조제2항 중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3항 전단의 괄호 부분에 누락된 조문을 추가하며, 그 밖에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안 제8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8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① -----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 ----- ----- ----- ----- ----- -----.
1. 대상지역의 국제물류시설에 무역항이 포함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1. ----- ----- 경우: ----- -----
2. 대상지역의 국제물류시설에 무역	2. -----

항이 포함되지 않는 <u>경우</u> : 국토교통부장관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u>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u> ③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u>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u>)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확정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⑧ (생략)	----- <u>경우:</u> ----- ----- ② ----- ----- <u>경우</u> ----- <u>따라 작성한</u> ----- ----- <u>제출하여야</u> -----. <u><후단 삭제></u> ③ ----- ----- -----(<u>같은 항 제2호의</u> ----- ----- ----- <u>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및 제30조에서</u> -----) ----- ----- ----- ----- ----- -----. ④ ~ ⑧ (개정안과 같음)
--	--

2. 임시허가 관련 규정 등 정비(안 제21조)

안 제21조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샌드박스 중 ‘임시허가’에 관한 내용임. 다만, 안 제21조제1항은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임시허가 권한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는 임시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⁴⁾

한편, 안 제21조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임시허가에 ‘임시허가 기간’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1조제7항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 등도 임시허가 ‘기간’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체계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봄.⁵⁾

따라서 안 제21조제1항은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를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21조제5항은 ‘임시허가 기간 등’ 부분의 문구를 삭제하며, 그 밖에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안 제21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1조(임시허가)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u>물류사업 및 물류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되어</u>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제8	제21조(임시허가) ① ----- ----- ----- <u>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는</u> ----- -- <u>해당하여</u> ----- -----

4) 다른 입법례의 경우 사업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임시허가 신청 시 별도로 ‘시·도지사’를 거치도록 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5) 참고로, 개정안에 따르면 ‘실증특례’의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정함(안 제18조제8항).

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임시

----- 국토교통부장관 및 -----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 법령에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맞는 -----
2. -----
----- 등을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

② -----
----- 신청 -----
----- 인정하는 -----
---- 통보하여야 한다. ---- 해당
----- 신청내용을 -----

-----.

③ -----

임시허가 신청자에게 -----
----- 경우 그 -----

-- 회신기간에 포함하지 -----.

----- 회신기간
내에 회신이 -----
---- 회신기간 연장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경우 -----

허가에 임시허가 기간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
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
보하여야 한다.

⑦ · ⑧ (생 략)

⑨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는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
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
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
·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생 략)

⑪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그로 인하
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
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생 략)

----- 조건을 -----.

⑥ -----
----- 임시허가
신청자에게 -----.

⑦ · ⑧ (개정안과 같음)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
-----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
비스로 -----
-----.
----- 자가 -----

----- 등에 -----
-----.

⑩ (개정안과 같음)

⑪ ----- 자가 임시허가를
받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
스로 -----
-----.
-----.

⑫ (개정안과 같음)

3. 그 밖의 체계·자구 정비(안 제14조 등)

안 제14조는 개정안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 등까지 모두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통상 이러한 경우 소관 부처 장관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⁶⁾

따라서 안 제14조의 허가권자를 ‘관할 시·도지사’로 수정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안 제14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4조(행위의 제한) 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u>국토교통부장관</u>	제14조(행위의 제한) ① ----- ----- ----- ----- ----- <u>관할 시·도</u>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행위의 제한 등) ①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및 <u>해양수산부장관의</u>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u>제1항에</u>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u>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u>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u>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u>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u>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u>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u>지사의</u> ----- -. ----- -----. ② ----- ----- ----- <u>같은 항에</u> -- ----- ----- <u>관할 시</u> · <u>도지사에게</u> ----- -----. 1. · 2. (개정안과 같음) ③ <u>시·도지사는</u> ----- ----- ----- -----. ④ <u>시·도지사는</u> ----- ----- ----- ----- -----.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